

200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환경부 환경평가과(2110-6716)

■환경영향평가기시 스코핑

(Scoping)제도 도입

• 현재는 사업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반항목(23개)과 중점평가항목 모두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어 간략하게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나 평가가 불필요한 항목까지 평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중요도·사업특성에 따라 필수적인 항목을 선정·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04.7)

■아울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대행자에게 맡길 경우 공사관련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부실평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04.7)

야생동물·식물 보호 강화

환경부 자연생태과(2110-6748)

■불법포획한 야생 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04.7)

자동차배출가스 관리강화

환경부 교통공해과(2110-6799)

■천연가스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중소차 등은 제작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04.1)

- CO: 4.0 0.4g/kwH

- HC: 0.9 0.2g/kwH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등 건설기계 대하여도 제작차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건설장비의 배출가스도 규제합니다.(04.1)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

환경부 유역제도과(2110-6841)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목표수질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됩니다.(04.8)

먹는물 관리 강화

환경부 수도관리과(2110-6880)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수돗물의 과잉소독 방지를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소독부산물질 5개 항목에 대하여 규제기준을 강화하였으며,(04.7)

• 적용대상을 10만톤 이상 정수장에서 전국의 모든 정수장으로 확대

•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하여 탁도기준을 0.5NTU에서 0.3NTU로 강화하는 한편, 정수장의 개별여과지 탁도를 연속하여 측정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04.7)

* 시설용량이 1일 10만톤 이상인 정수장에 적용

폐기를 재활용 제도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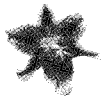
환경부 자원재활용과(2110-6954)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강화합니다.

• TV, 냉장고, 컴퓨터, 타이어 등의 제품과 종이팩·금속캔·유리병 등에 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필름형 플라스틱 포장재와 형광등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04.1)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분리배출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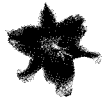
•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그동안 유예 하였던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 대한 분리배출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04.1)



200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범위선 정제도(스코핑 제도)도입	-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일반항목 (3개분야 23개항목)과 사업별 중점평가항목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범위를 지역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항목 범위확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사업지역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중요도 등에 따라 필수적인 중점평가항목 및 범위를 협의 결정토록 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법 제29조 (2004. 7. 1)	환경평가과 ☎ 2 1 1 0 - 6716
2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분리 발주의무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자가 평가서작성을 위한 대행계약시 설계용역자에게 설계와 평가를 일괄하여 맡김	-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발주도 록 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법제7조제2항 (2004. 7. 1)	환경평가과 ☎ 2 1 1 0 - 6716
3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확대	- 현행 환경영향평가기준으로 환경기준(대기, 수질, 소음)만을 정하고 있음	- 생태계보전 판단기준인 생태 자연도,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 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환경영향 평가기준으로 추가 설정함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법제30조 (2004. 7. 1)	환경평가과 ☎ 2 1 1 0 - 6716
4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공개 의무	- 공개의무규정은 없었으나 정보공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평가관련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승인 기관 및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도록 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법 제6조의 2(2004. 7. 1)	환경평가과 ☎ 2 1 1 0 - 6716
5	환경신기술 현장 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종전에는 '환경기술발전촉진을 위한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00.9 제정)에 따라 환경부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환경시설 공사에만 입찰가점 부여, 시공실적 인정 등의 혜택	-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주 하는 공사에 입찰하는 환경신기술 보유업체에 입찰가점을 부여 - 환경신기술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효과를 위해 환경신기술표지(ET마크) 제도 도입 - 환경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 유효기간 연장, 환경신기술 취소 제도 도입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 18조의2,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2004.1.1)	환경기술과 ☎ 2 1 1 0 - 6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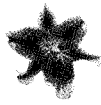
< 계속 >



200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6	특정도서 지정을 위한 자연생태 기초조사 실시	- 지정된 특정도서의 자연생태 계보전기본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기초조사 실시	- 자연생태계보전기본계획을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으로 변경 - 특정도서 지정을 위하여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무인도서등에 대하여 자연생태 기초조사제도 신설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6조1항 (04.7)	자연정책과 ☎ 2110-6737
7	특정도서내 토지등 매수제도 도입	<신 설>	- 효율적인 특정도서 지정·관리, 지역주민 불편해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토지 등 매수규정 제도 도입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2 (04.7)	자연정책과 ☎ 2110-6737
8	시·도 특정도서 지정제도 도입	<신 설>	- 국가이외에도 시·도지사의 특정도서 지정·관리제도 도입 · 도서명칭·위치·면적등을고시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제12조의3 (04.7)	자연정책과 ☎ 2110-6737
9	시·군 야생동물 구조센터 신설·운영	- 부상조수의 구조·치료를 영세한 민간단체에서만 시행	- 부상조수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시·군·구 야생동물구조센터 건립비 지원제도 신설 · 04년도에 10억원 국고지원	야생동물보호법 제20조(04.7 예정)	자연생태과 ☎ 2110-6753
10	야생동물·식물 보호강화	-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 한자에 대해서만 처벌 - 보호대상 야생동물·식물에 양서·파충류 미포함	- 밀렵·밀거래된 야생동물을 먹는 자에 대한 처벌 신설, 처벌대상이 되는 야생동물의 종류 지정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양서·파충류의포획금지대상추가 - 멸종위기야생동물·식물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한 「야생동물·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제도 신설 · 건축물 등 신축·증축 행위, 토지형질 변경, 하천·호소 등 구조 변경, 토석채취에 대한 행위 금지 - 시·도의 「야생동물·식물 보호구역」 지정 제도 신설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9조, 제19조, 제27조 (04.7 예정)	자연생태과 ☎ 2110-6748

<계 속>



200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1	생활소음 규제 강화		· 이용·개발 등 행위시 관할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		
		- 산업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에서 제외	- 산업단지내라 하더라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지역에 포함토록 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04.1.1)	생활공해과 ☎ 2110-6814
		- 발파소음·진동 규제 완화	- 발파소음·진동 규제 완화 예) 주거지역(낮): 70dB 80dB로 완화		
- 공사장소음 규제 강화	-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5dB강화(5년후 시행) 예) 주거지역(낮): 70dB 65dB로 강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09.1.1)			
12	비산먼지관리 강화	<p><신 설></p> <p>-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간: 사업시행일 3일전(변경신고는 변경일 3일전)</p> <p>-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사업장인 경우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제출</p>	<p>- 비산먼지발생 대상사업에 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과 고철·곡물의 보관업 및 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을 추가함</p> <p>-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간을 사업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전), 변경신고는 변경전(사업장의 명칭 및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까지 신고토록 함</p> <p>-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변경)서와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함</p> <p>- 비산먼지발생 신고대상사업으로 건축폐기물처리업,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선실블럭제조업에 한함)을 추가함.</p>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04.1.1)</p>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03.12.10)</p>	생활공해과 ☎ 2110-6812

<계속>



200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번호	제 목	증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되는 공동주택내 각종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주민입주 전에 측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에는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오염물질을 설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연 1회 이상 자가측정하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오염물질을 다량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고시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함 <p>*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법 시행이전까지 마련 예정</p>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 (04.5.30)	생활공해과 ☎ 2110-6818
14					
15	제작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강화	- 천연가스 사용 버스· 화물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CO: 4.0g/kwH · HC: 0.9g/kwH	- 천연가스 사용 버스· 청소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산화촉매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수준으로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CO: 4.0 0.4g/kwH · HC: 0.9 0.2g/kwH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0 (버스 2004. 1. 1, 청소차 2004.7.1)	교통공해과 ☎ 2110-6799
16	건설기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신설	<신 설>	- 건설기계중 굴삭기, 로우더, 지제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장비 제작단계에서 기준 적합여부를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0 (2004. 1. 1)	유역제도과 ☎ 2110-6841
	수질오염총량 관리 제도 시행	-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목표수질이 초과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낙동강수계물 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2004.8.1)	유역제도과 ☎ 2110-6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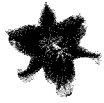
<계 속>



200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 시행일	관계부서
17	낙동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 1톤당 100원	- 1톤당 110원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2004.1.1)	유역제도과 ☎ 2110-6840
18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	- 1톤당 120원	- 1톤당 130원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2004.1.1)	유역제도과 ☎ 2110-6840
1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 1톤당 120원	- 1톤당 130원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2004.1.1)	유역제도과 ☎ 2110-6840
20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수질기준 설정 및 관리지점 시행	- 기타수질오염원인 수산물 양식시설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적용하였으나 · 양식수조의 20%이상의 침전시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 시·도지사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양식장 수질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내지 제51조	산업폐수과 ☎ 2110-6845
21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변경	- 6시간	- 24시간 균등분배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 설치 · 1일 100톤 이상인 경우 10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 설치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2004.1.1)	생활오수과 ☎ 2110-6856
22	단독정화조의 한국산업규격 재질기준 시행	-	- 단독정화조 한국산업규격(KS) M3604-2(재활용 폴리에틸렌제 정화조 구성부품)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 등에 관한 재질기준 시행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의2(2004.7.1)	생활오수과 ☎ 2110-6856

<계속>



200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연도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3	먹는물 수질기 준강화시행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7월부터 과잉소독 방지를 위하여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 도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mg/l이하 ·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mg/l이하 ·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l이하 ·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l이하 · 할로아세틱에시드 0.1mg/l이하 - 2004년7월부터 병원성 미생물 관리강화를 위해 탁도기준이 0.5NTU에서 0.3NTU(매월 측정된 시료수의 95%이상)로 강화하는 한편, 연속자동측정장치를 사용하여 매 15분 간격으로 개별여과지에 탁도측정의무화 * 시설용량이 1일 100,000톤 이상인 정수장에 적용 	먹는물수질기 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 (2004.7.1)	수도관리과 ☎ 2110-6880
24	먹는샘물·정수기등 먹는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지도·관리권한 지방이양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업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수행 - 수질개선부담금 미납업체에 대한 제재수단 미비 - TV, 냉장고, 컴퓨터, 타이어 등의 제품과 종이팩·금속캔·유리병·용기류·플라스틱 포장재 등에 대하여 재활용 의무부과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제조 및 수입판매업과 관련하여 샘플개발허가 등 34개 사무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이상 납부하지 않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절차 완료 전 수입검사를 거부할 수 있고, 국내제조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납부증명표지 사용 제한기능 	먹는물 관리 법(2004.7.1 예정)	수도관리과 ☎ 2110-6880

<계속>



200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정책

번호	제목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25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 TV, 냉장고, 컴퓨터, 타이어 등의 제품과 종이팩·금속캔·유리병·용기류·플라스틱 포장재 등에 대하여 재활용 의무부과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필름류 플라스틱포장재, 형광등을 추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 16조 (2004.1.1)	자원재활용과 ☎ 2110-6954
26	분리배출표시 제도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분리배출 표시제도 도입, 2003.12.31까지 유예	- 2004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대하여 분리배출 표시 의무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 14조 (2004.1.1)	자원재활용과 ☎ 2110-6954
27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도	<신 설>	-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에서 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 10조 및 신고 포상금제 시행 지침 (03.9.4) *시·군·구 조례로 제정, 04.1.1시행예정	폐기물정책과 ☎ 2110-6917~8



2004년 환경기술인 실무교육 안내

-본지 136 페이지 참조-